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선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2.

발 의 자 : 백선회 · 황운하 · 박희승
정준호 · 황명선 · 김준형
박은정 · 정춘생 · 신장식
최혁진 · 서왕진 · 이해민
한창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화물 적재함에 탑승 중 이던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, 원인으로 차량의 노후화, 좌석안전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. 이에 따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.

그런데 현행법은 군수품을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, 합동참모본부와 육군·해군·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군용차량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.

현행법상 중요한 사항인 군수품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군용차량은

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, 탄약, 군용차량, 통신·전자장비, 피복, 식량,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,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·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·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13조의3).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물품을”을 “화력, 탄약, 군용차량, 통신·전자장비, 피복, 식량, 의료품 등의 물품을”로 한다.

제3장제4절의 제목 “처분”을 “운용·처분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군용차량의 관리)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군용차량의 사용 목적, 정비 상태, 내용연수,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군용차량의 등록, 재물조사 및 불용결정
2. 정비 이력 및 사고 이력의 기록·관리
3. 보안 장비 또는 군사 정보가 탑재된 차량의 분해·폐기 절차
4. 운용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조치
5.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군용차량 중 병력 및 물자 수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방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설계·제작된 군용화물차(이하 ‘군 표준차량’이라 한다.)의 주요 구조 및 장치·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·안전기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군수품”이란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, 합동참모본부(이하 “국방관서”라 한다)와 육군·해군·공군(이하 “각군”이라 한다)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화력, 탄약, 군용차량, 통신·전자장비, 피복, 식량, 의료품 등의 물품을 -----.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4절 <u>처분</u>	제4절 <u>운용·처분</u>
<u><신설></u>	제13조의3(군용차량의 관리) ① <u>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군용차량의 사용 목적, 정비 상태, 내용연수,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 1. <u>군용차량의 등록, 재물조사 및 불용결정</u> 2. <u>정비 이력 및 사고 이력의</u>

기록·관리

3. 보안 장비 또는 군사 정보가
탑재된 차량의 분해·폐기 절차

4. 운용 중 사고 발생 시 즉시
보고 및 조치

5.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
는 사항

② 군용차량 중 병력 및 물자
수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방
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설계·
제작된 군용화물차(이하 ‘군 표
준차량’이라 한다.)의 주요 구
조 및 장치·부품 등의 범위와
성능·안전기준 등 관리에 관
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
다.